

부산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4가단1701 판결 [건물명도 등]

전 문

원고1. A

2. B

피고C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24. 10.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각 2023. 8. 2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조윤정

별지

1)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민법 제408조 참조), 공동임대인들인 원고들의 차임지급채권은 분할채권이다. 그리고 공유물 무단 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57255 판결 등 참조),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택한다.